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15
----------	-------

발의연월일: 2025. 9. 9.

발 의 자: 박주민 · 김한규 · 김 윤
서미화 · 최혁진 · 이재정
진선미 · 진성준 · 김남근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2015년)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년, 2022년) 역시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고 고,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또한,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11조 삭제).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안 제312조).

주요내용

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나.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12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및 제3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307條(名譽毀損) ①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5年 以下の 懲役, 10年 以下の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09條(出版物 等に 依한 名譽毀損) ①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の 懲役, 10年 以下の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10條(違法性の 阻却) 第307條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	<삭 제>

<u>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u> <u>제311조(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の 罰金에 처한다.</u> <u>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u> <u>①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u> <u>②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u>	<u><삭 제></u> <u>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u>
---	--